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1가단5288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박일섭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10,499,84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6.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 10,527,08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6.0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 51,809,24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10.3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 3,576,570원 및 그 중 3,338,208원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24,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3) 21,564,457원 및 그 중 19,996,662원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24,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1.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4. 접수 제119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2021. 10. 19.”을 모두 ‘2021. 10. 18.’로 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대출금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금 등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일부 대출금 채무와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액(원)	보증인	보증한도액(원)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3. 22.	110,000,000	-	-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12. 29.	50,000,000	B	60,000,000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20. 6. 24.	20,000,000	B	24,000,000
4	중소기업 자금대출	2020. 9. 4.	200,000,000	-	-
5	신용카드	2016. 9. 30.	-	B	24,000,000

2) 피고 회사는 2020. 5. 29.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체하여 위 채무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2021. 10. 18.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대출(신용카드사용대금 포함) 원리금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 합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977,213원에 이른다.

단위 : 원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총합계	이율(%)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3. 22.	10,000,000	499,849	10,499,849	6.51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12. 29.	50,000,000	1,809,249	51,809,249	10.39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20. 6. 24.	3,338,208	238,362	3,576,570	10.9
4	중소기업 자금대출	2020. 9. 4.	10,000,000	527,088	10,527,088	6.06
5	신용카드	2016. 9. 30.	19,996,662	1,567,795	21,564,457	19.87
합계			93,334,870	4,642,343	97,977,213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여신거래약정서), 갑 제5호증의 1(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갑 제5호증의 2(근보증서), 갑 제6호증(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10. 18.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는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21. 6. 2.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금 기준 38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 B는 위 채권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2) 2021. 6. 2. 당시 피고 B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당시 거래가액은 180,000,000원 정도였다. 한편 그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478,962,000원으로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적극재산(원)		소극재산(원)	
서울 강북구 D 제3층 E호	180,000,000	중소기업은행	60,790,000
		F은행	189,987,000
		G은행	15,298,000
		H	8,231,000
		I	5,100,000
		J카드	1,810,000
		K카드	2,635,000
		L카드	13,111,000
		M조합	182,000,000
합계 180,000,000		합계 478,962,000	

3)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1. 6.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4. 접수 제11969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불과 20일 전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하였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사해행위를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2021. 6.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4. 접수 제119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적용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D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N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지하층 75.29㎡, 1층 75.29㎡, 2층 75.67㎡, 3층 73.48㎡, 옥탑 9.2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D, 대 1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64.2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62분의 39.67. 끝.

